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25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6.

발 의 자 : 문미옥 · 고용진 · 윤종오

김정우 · 신용현 · 박 정

이원욱 · 신경민 · 김병관

홍의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,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제2호).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4조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에”를 “제14조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 제8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	제15조(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) ①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(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5조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2. -----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